

##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4. 12.

- 건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기 지급분 반환 및 2회차 부지급 처분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공시송달
- 근거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3항제4호 및 제17조, 같은 법 제29조  
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불능 사유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차○미	1968.1.22	광주광역시 동구 (이하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기 지급분 반환 및 2회차 부지급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(의견제출 통지)	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률 제7조(구직촉진수당의 수급요건) 및 제17조(취업성공수당 지급),제29조(취업지원종료) (창업일 이전 직접일자리 선정)	○ 국민취업지원제도 1회차 취업성공수당 과오지급액 반환 (500,000원) ○ 2회차 취업성공수당 부지급	폐문부재

4. 공고기간 : 2024.4.12. ~ 2024.2.26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담당자 김경미(☎ 062-609-878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